체육관운영및관리규정 4-5-12

규정번호 4-5-12
제정일자 2016.9.2
최근개정
개정차수
관리부서 총무회계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본교라 함) 체육관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허가 받은 외부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이용원칙) 체육관의 시설과 기자재는 본교 공식행사와 수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학교행사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관장) 체육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체육관장은 체육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체육관 운영계획
2. 체육관 시설 및 기자재의 보관과 유지 관리
3. 체육강의를 위한 체육관 사용시간 조정
4. 기타 체육관과 관련되는 사항 등

제6조(체육관 이용)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학과 및 부서 등) 및 외부인의 체육관 사용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관의 교내 사용에 관해서는 체육관장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에게 '체육관 시설이용신청서(별표 1 : 교내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학생의 수업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시설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외부 대관에 관해서는 사전에 '체육관 시설이용신청서(별표 2 : 교외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이 체육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외부 이용자에게 체육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육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경비) ① 체육관 시설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교비로 충당한다.

② 체육관의 유지관리비는 교비회계로 처리하되, 수입은 대여료 및 사용료 계정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10조(기자재의 반출금지) 체육관내에 비치된 각종 기자재는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상 주의) 체육관 시설 사용 중 기자재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시키거나 파손범위에 따라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수칙) 체육관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기자재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된 이용기간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후에는 원상대로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시설 내에서는 규정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5. 화재에 주의하고 화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이용자는 체육관 관리담당자의 지시 및 퇴관명령에 따라야 한다.
7. 기자재 및 시설 파손 및 분실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및 기자재의 안전 상태를 점검 후 퇴관 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체육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관 시설이용신청서(교내용)

결재	담 당	팀 장	처 장
		전결	

합의	체육관장

부서,학과			**운 영 자**	
			연 락 처	
이 용 일 시			**이용예상인원**	
이 용 목 적				
이 용 내 용				
부 대 시 설 사 용 현 황	마 이 크	사용 ( ) / 미사용 ( )	사 용 자	
	빔프로젝트	사용 ( ) / 미사용 ( )	사 용 자	
	냉 난 방	사용 ( ) / 미사용 ( )	가 동 시 간	
기타요청사항				

위와 같이 체육관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명지전문대학총장 귀하

[별표 2]

체육관 시설이용신청서(교외용)

결재	담 당	팀 장	처 장
		전결	

합의	체육관장

이 용 일 시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이 용 단 체		이용예상인원	명
이 용 사 유			
이 용 시 설			
이 용 준 칙	체육관 운영 및 관리규정 제 12 조		

위와 같이 체육관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연 락 처 :

명지전문대학총장 귀하